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1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김용덕[6571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7-8214호

시행일자 2024. 10. 2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213호(2024. 10. 23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을 일부 개정·발령한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내용

-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19조[별표1의2] 일부개정
-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개정 신설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
-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 신설에 따른 의과, 치과, 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

나. 시행일 : 2024. 10. 25.(금)

#붙임자료 :

- 1) 보건복지부 일부개정안 1부.
- 2) 보건복지부 개정 전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* 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